

의 안 번호	제2760호~제2761호
--------------	---------------

2026. 9. 14.(월) 11:00
제3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2건: : 붙임 참조 (일부개정안 1, 규칙안 1)



의회운영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760호: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761호: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2차 운영위)
제2760호	2026. 8. 21.	장성군의회 의장 (봉맹구의원 외1명)	2026. 8. 26.	2026. 9. 4.
제2761호	2026. 8. 21.	장성군의회 의장 (봉맹구의원 외1명)	2026. 8. 26.	2026. 9. 4.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6. 8. 21.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회장(봉맹구 의원 외1명)
- 회부일자 : 2026. 8. 26.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9. 4.(제38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심사 절차와 징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 보완(안 제1조 및 제2조)
- 수의계약 및 겸직 관련 윤리실천규범 강화(안 제3조)
 - 수의계약 제한, 사적이해관계 사전심의, 겸직 제한 및 겸직 현황 공개에 관한 기준을 신설
- 윤리심사 절차 정비(안 제4조)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를 정비
- 의원 징계기준 및 양정기준 정비(안 제9조)
 - 징계기준을 별도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겸직 관련 위반행위의 징계기준을 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심사 절차 및 징계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특히, 기존 조례에 규정된 개별 비위행위별 징계기준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는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윤리심사 및 징계기준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검직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6. 8. 21.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회의장(봉맹구 의원 외1명)
- 회부일자 : 2026. 8. 26.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9. 4.(제38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반영 협조 요청에 따라, 기존 개별 비위행위 중심의 징계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징계양정 기준으로 개편하고, 징계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징계사유 확대(안 제2조)
 - 겸직 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등 20개 항목으로 확대
- 징계 양정 기준 세분화(안 제3조)
 - 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및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 징계의결 기한 신설(안 제4조)
 - 징계가 요구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징계 여부를 의결하도록 기한 명확화
- 징계결과 공개 신설(안 제5조)
 - 징계처분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 누리집에 1주일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규칙안은 기존 개별 비위행위별 징계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정도와 고의·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징계양정 기준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명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음주운전 기준 세분화 및 새로운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제2762호, 2764호
----------	---------------

2026. 9. 14.(월) 11:00
제3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2건: (제정안1건, 변경계획안1건)



관광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762호 :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2764호 :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관복위)
제2762호	2026. 8. 25.	장 성 군 수 (가 족 행 복 과 장)	2026. 8. 26.	2026. 9. 4.
제2764호	2026. 8. 25.	장 성 군 수 (기 획 실 장)	2026. 8. 26.	2026. 9. 4.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6. 8. 25.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회부일자 : 2026. 8. 26.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9. 4.(제380회 제2차 관광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소녀상 보호·관리, 훼손방지 조치(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소녀상 등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훼손·오용 방지와 함께 기림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근거법령 및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6. 8. 25.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6. 8. 26.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9. 4.(제380회 제2차 관광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2026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

(단위: 천원)

부서명	출연기관	2026 출연금		변경이유	관련법령
		당초	변경		
관 광 과	(재)장성군 관광문화재단	200,000	360,000	2026년 재단 출범에 따른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사업비 등 운영재원 필요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변경계획안은 2026년 출범 예정인 (재)장성군관광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출연금 2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 되어 있음.

- 당초 출연금 2억 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추가 출연금 1억 6천만 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현재 관광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정 등 설립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직·정원·보수체계 등 재단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 충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 단계에서 추가 출연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상임이사와 관련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재단의 주요 인적 구성과 조직·운영체계가 우선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 편성된 출연금 2억 원은 유지하되, 상임이사 선정 등 재단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추가 출연금의 필요성과 규모를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관광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출연금 1억 6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그 사유가 있음.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 편성된 출연금 2억 원은 유지하되 추가 출연금 1억 6천만 원은 재단의 조직·운영체계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확정된 이후 그 필요성과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조직·운영체계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확정된 이후 추가 출연금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 번호	제2766호
----------	--------

2026. 9. 14.(월) 11:00
제3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안 건
총 1건: : 일부개정안 1



건설농정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766호: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1차 건동위)
제2766호	2026. 8. 25.	장 성 군 수 (인 구 경 제 실)	2026. 8. 26.	2026. 9. 4.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6. 8. 25.
- 제 출 자 : 장성군수(인구경제실장)
- 회부일자 : 2026. 8. 26.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9. 4.(제380회 제1차 건설농정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제2조(정의)에 인용된 상위법의 변경사항 반영
-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중 거주조건을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혼선 방지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
-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명확화(별표)
(현행)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 포함)이상 계속해서 거주
(개정) 장성군 내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의 거주요건을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칙에서 개정규정의 적용례와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안 부칙 제1조에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안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개정된 지원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부칙 제3조의 표제를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특례”에서 “경과조치”로 변경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제3호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있음(회의록 참고)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 시행일 단서 신설

-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 결혼축하금 지원 기준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

○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규정 정비

- 안 부칙 제2조의 내용을 “표 제3호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

○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특례 표제 수정 및 경과조치 신설

- 안 부칙 제3조의 표제를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특례”에서 “경과조치”로 변경하고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①2026년 12월 31일까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제3호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별표 제3호 지원기준란 중 “전라남도”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1조(시행일) ----- ----- . 다만, 별표 제3호 결혼 축하금 지원기준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결혼축하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혼축하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결혼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혼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인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혼 축하금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전라남도”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2026년 12월 31일까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제3호에 따른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별표 제3호 지원기준란 중“전라남도”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의안 번호	제 2756~제 2769호
----------	----------------

2026. 9. 14.(월) 11:00 제3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총 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756호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의안번호 제2767호 -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의안번호 제2768호 -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 의안번호 제2769호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II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발 의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제2756호	2026. 7. 2.	장성군수	2026. 9. 2.	2026. 9. 3.
제2767호	2026. 8. 25.	장성군수	2026. 9. 2.	2026. 9. 3.
제2768호	2026. 8. 25.	장성군수	2026. 9. 2.	2026. 9. 3.
제2769호	2026. 8. 25.	장성군수	2026. 9. 2.	2026. 9. 7. ~2026. 9. 10.

III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6. 7. 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26. 9. 2.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 9. 3.)

2. 세입 · 세출 결산 개요[일반회계 · 특별회계]

가. 세입 · 세출결산

○ 세입 ·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792,630,402,990	799,575,131,984	609,952,122,640	189,623,009,344
일반회계	781,536,485,990	787,627,340,838	601,790,348,750	185,836,992,088
특별회계	11,093,917,000	11,947,791,146	8,161,773,890	3,786,017,256

○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189,623,009,344	29,251,833,850	47,632,573,100	67,185,220,270	5,747,515,970	39,805,866,154
일반회계	185,836,992,088	28,430,833,850	47,628,367,450	67,185,220,270	5,715,110,510	36,877,460,008
특별회계	3,786,017,256	821,000,000	4,205,650	-	32,405,460	2,928,406,146

나. 기금 결산

○ 2025년말 기금 현재액은 11,87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 1,198백만원
- 식품 진흥 기금 : 91백만원
- 고향 사랑 기금 : 1,442백만원
- 사회 복지 기금 : 4,403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 1,783백만원
- 재난 관리 기금 : 2,899백만원
- 옥외 광고 발전 기금 : 62백만원

다. 채권 결산

○ 2025년말 채권 현재액은 8,67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 회 계 : 7,485백만원
- 특 별 회 계 : 1,186백만원

라. 채무 결산

○ 2025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임.

마. 공유재산 결산

○ 2025년말 공유(군유)재산 현재액은 1,810,60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토 지 : 164,178천m² 376,582백만원
- 건 물 : 184천m² 247,808백만원
- 입 목 죽 : 5,824백만원
- 공 작 물 : 364,779백만원
- 기 계 기 구 : 6,800백만원
- 무 체 재 산 권 : 4,618백만원
- 용 의 물 권 : 399백만원
- 회 원 권 : 246백만원
- 건 설 중 인 재 산 : 164,364천m² 803,551백만원

바. 물품 결산

- 2025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723개 33,61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 년 도 말 :	646개	7,025백만원
. 신 규 취 득 등 :	123개	68,733백만원
. 매 각 :	46개	42,148백만원

사. 재무회계 결산

-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산(A)	부 채(B)	순자산(A-B)	비 고
2025년도	3,004,415	12,343	2,992,072	

-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A)	비 용(B)	운영차액(A-B)	비 고
2025년도	585,394	511,768	73,626	

-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가	순자산감소	기말순자산
2,950,067	73,626	6	31,627	2,992,072

- 붙임 1. 2025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책
2. 2025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서(재무제표, 부속서류 포함) 2책

3. 예비비 사용개요

-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일반회계) : 4,070,000,000원
- 2025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일반회계)

(단위: 원)

지출내역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872,034,000	2,848,462,580	0	23,571,420
방 재	312,500,000	309,372,430	0	3,127,570
긴 급 지 원	2,559,534,000	2,539,090,150	0	20,443,850

4. 기금 사용 개요

- 기금 결산

(단위: 원)

기금명 (운용부서)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입액 (다)	지출액 (라)	
합 계	27,109,364,518	△15,231,203,329	3,363,072,281	18,594,275,610	11,878,161,1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 획 실)	17,465,004,530	△16,267,483,710	230,335,830	16,497,819,540	1,197,520,820
식품진흥기금 (인 구 경 제 실)	88,382,904	2,528,090	8,635,960	6,107,870	90,910,994
고향사랑기금 (총 무 과)	1,030,620,050	411,037,450	664,321,100	253,283,650	1,441,657,500
사회복지기금 (주 민 복 지 과)	3,418,636,654	984,672,611	1,157,102,611	172,430,000	4,403,309,265
폐기물 처리시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환 경 과)	1,805,550,520	△22,805,890	183,733,310	206,539,200	1,782,744,630
재난관리기금 (재 난 안 전 과)	3,258,098,998	△358,851,640	1,098,938,680	1,457,790,320	2,899,247,358
옥외광고발전기금 (지 역 개 발 과)	43,070,862	19,699,760	20,004,790	305,030	62,770,622

5. 전문위원 검토 보고

가. 세입·세출 결산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회의 결산승인은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7,926억 3,040만원, 세입결산액은 7,995억 7,513만원, 세출결산액은 6,099억 5,212만원이며, 세잉잉여금은 1,896억 2,301만원으로 나타남.
- 결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집행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월액이 1,440억 6,963만원으로 비교적 큰 규모인 만큼,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와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 등 세입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국·도비 보조금 확충, 농업예산 확충,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정책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각종 체납액 징수 등 19건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나. 예비비 지출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070백만원이며, 이 중 지출결정액은 2,872백만원, 지출액은 2,848백만원으로 나타남.
- 지출내역은 방재 분야 309백만원, 긴급지원 분야 2,539백만원으로 총 2,84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방재 및 긴급지원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지출되어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의 사용 목적과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기금 결산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25회계연도 말 장성군 기금은 7개 기금, 11,878,161천원으로 전년도 말 27,109,364천원보다 15,231,203천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해연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조성액 및 집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은 관계 법령 및 기금별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결산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주요 지적사항 : 해당없음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기타 필요 사항 : 해당없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I. 심사대상

-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I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6. 8. 25.
- 제출자 : 장 성 군 수
- 회부일자 : 2026. 9. 2.
- 상정일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9. 2. ~ 9. 14.)
 - 실·과소장 질의·답변 및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및 의결
- 의결일자 : 2026. 9. 10.(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의결

III. 예산안 총괄

- 규모 : 6,568억 원
- 회 계 별
 - 일반회계 : 6,451억 원
 - 특별회계 : 117억 원

○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합계	656,848	603,554	53,294
일반회계	645,079	591,927	53,152
특별회계	11,769	11,627	142

IV. 제안설명 요지

○ 생략

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및 보전 수입, 내부거래 변경 등에 따라 533억 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하였음.
-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조정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증액 반영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신규사업 및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것임.

Ⅵ.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

- 별도 회의록 비치

Ⅶ.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수정가결(별첨 자료 참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결과

1. 세 입 : 656,848,099천원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656,848,099	0	0	0	656,848,099
일반회계	645,079,325	0	0	0	645,079,325
특별회계	11,768,774	0	0	0	11,768,774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656,848,099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880,000천원(붙임 1 삭감조서 참조)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880,000천원(붙임 1 삭감조서 참조)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656,848,099	880,000	880,000	0	656,848,099
일반회계	645,079,325	880,000	880,000	0	645,079,325
특별회계	11,768,774	0	0	0	11,768,774

라. 삭감조서 : 붙임과 같음

마. 증액조서 : 붙임과 같음

붙임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및 증액조서

1. 삭감조서

가. 일반회계

(단위:천 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5개 사업	1,969,400	880,000	1,089,400
178	405-01	청년상가 집기비품 구입	100,000	60,000	40,000
215	306-01	장성 관광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160,000	160,000	0
218	401-01	장성호 관광단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100,000	20,000	80,000
500	307-02	전남(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시비)	80,000	12,000	12,000
		전남(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군비)		28,000	28,000
521	401-01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529,400	600,000	929,400

나. 특별회계 : 해당없음

2. 증액조서

가. 일반회계

(단위:천 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계		880,000	880,000
801-01	일반 예비비	0	880,000	880,000

나. 특별회계 : 해당없음